

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신원철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365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6년 8월 16일
발 의 자 : 신원철 의원(1명)
찬 성 자 : 박운기, 조상호, 문형주,
김동율, 김용석(도봉), 장인홍,
박진형, 최웅식, 김창원,
서윤기, 김인제 의원(11명)

1. 제안 이유

- 서울시설관리공단의 경우 공단 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상임이사가 공단의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단의 방만 경영을 방지하고, 공단 운영의 투명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
- 이에 반해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는 상임임원 및 직원에 대한 겸직제한 규정만 두고 비상임이사에 대한 별도의 겸업금지 조항을 두지 않고 운용하고 있는 바, 비상임이사가 도시철도공사와 관련있는 영리목적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공사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가. 비상임이사는 공사의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(안 제12조제2항)

3. 참고 사항

가. 관련 법령 : 『지방공기업법』 및 같은 법 시행령, 시행규칙

나. 예산 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별첨)

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12조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비상임이사는 공사의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수 정 안
<p>제12조(겸직제한)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, 상임임원은 시장의,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</p> <p><u>〈신 설〉</u></p>	<p>제12조(겸직제한) ①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, 상임임원은 시장의,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</p> <p>② <u>비상임이사는 공사의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.</u></p>

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비용발생요인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

3. 미첨부 사유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.

4. 작성자

- 서울특별시의원 신원철